

# 제안요청서

사업명	2025년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위탁사업(재공고)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수원고용센터)

2025. 1.



## 차 례

I. 위탁사업명	1
II. 위탁사업 내용	1
III. 과업 내용	1
<1> 목적	1
<2> 과업의 내용 및 범위	1
IV. 입찰 개요	4
<1> 입찰 참가 자격	4
<2> 입찰 제출서류 및 신청	5
V. 제안서 작성요령	7
VI. 심사 및 결과 발표	7
VII.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위탁계약 체결	9
VIII. 기타 유의사항	10
IX. 문의처	10
※ 붙임 1~3	11
※ 서식 1~8	14

### I. 위탁사업명

- 2025년 「구직자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위탁사업

### II. 위탁사업 내용

#### □ 사업개요

- 고용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집단상담과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전문 고용서비스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 위탁규모 :

- (재공고)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관내 센터 106,000천원 이내[붙임1 참조]

사업명	공모지역(고용센터 관할 기준)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안산고용센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5년 12월(최대 1년)

#### □ 법적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12조(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지원 등)
- 직업안정법 제3조(정부의 업무)

### III. 과업 내용

#### <1> 목적

- 직업 선택, 취업 의욕 고취, 구직 기술 향상 등에 필요한 집단상담,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직자의 빠른 취업을 지원

#### <2> 과업의 내용 및 범위

##### □ 프로그램의 운영

- 고용센터 또는 고용센터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구직자 등의 취업

의욕 고취와 구직기술 향상 등을 지원하는 집단상담, 취업특강 등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① 집단상담 프로그램(이하 '집단상담') :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매뉴얼 등 개발·보급하여 고용센터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프로그램 1회당 2일 12시간~4일 24시간)

\* 취업희망프로그램, 고졸청년층 취업지원프로그램(H+),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CAP@), 신중년재취업설계프로그램(신호탄), 40대 구직자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4U)

- ② 취업특강 프로그램(이하 '취업특강') :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매뉴얼 등 개발·보급하여 고용센터에서 운영 중이거나 운영기관에서 자체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프로그램 1회당 2시간)

\* [붙임1]의 프로그램별 최소 운영횟수를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지)청과 협의하여 예산 범위에서 3시간 취업특강 일부 운영 가능

- 프로그램 홍보와 고용센터·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자 발굴·지원

- 프로그램 운영 후에는 참여자에 대한 모바일 만족도 조사 실시

- 그밖에 추진실적 보고, 관련서류 제출, 사업운영 정보 공유, 고용노동부와 지방고용노동(지)청 요청사항 협조 등

#### □ 추진 방식

- 고용노동부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지침과 위탁사업 시행지침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참여자를 모집·선발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

- 프로그램은 대면 진행이 원칙이나, 참여자 특성이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대면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

- 프로그램은 고용센터 내 운영이 원칙이나, 고용센터 여건, 참여자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 또는 프로그램 신청기관(학교 등)의 시설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지역 상황과 서비스 수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지)청 간 협의**를 통해 다른 **지방고용노동(지)청의 담당지역**에서도 프로그램 운영 가능
- **지원내용** : 프로그램 **1회당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위탁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급
- **집단상담프로그램** : 프로그램별 운영일수·시간 및 1회당 평균 참여자 수에 따라 차등 지급(1회당 대면 120~240만원, 비대면 110~170만원)
- **취업특강프로그램** : 운영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회당 2시간 25만원, 3시간 30만원)
- **서류관리 및 보존**
  - 운영기관은 프로그램 참여자의 인적사항, 상담건수, 운영비 및 정산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에 **사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실적 보고**
  - 수료자 현황 등 **프로그램 진행결과**는 시행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프로그램 종료 시마다 고용24에 입력·관리**
  - **월별 사업실적 보고서**를 **익월 7일**까지 제출
    - \* 모든 프로그램 실적은 워크넷에 입력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함
  - 2025년도 프로그램의 운영이 **전부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 \* 계약된 프로그램의 운영을 모두 완료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일 전이라도 최종 결과보고 및 정산 가능
- **지도·점검**
  - 지방고용노동(지)청 대표 고용센터(거점센터)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 3 -

- \* ①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 ②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 ③ 직업안정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 ④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각각의 그 연합체
- 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⑥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해당 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조직과 인력을 갖춘 단체
- \*\* 공동도급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제출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있을 것

- **신청 제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사업자)은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도 심사에서 제외
    - 1) 사업체의 대표(법인의 경우 임원을 포함)가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2) 고용노동부의 위탁사업에 참여했던 기관(사업자)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에 참여하여 위탁계약해지 조치를 받고 계약해지 통보일로부터 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사업자)
      - ㉡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위탁사업 운영기관으로서 위탁기관의 계약해지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해지 통보일로부터 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사업자)
    - 3) 신청일 현재 신청 자격이 없거나,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사업자)

- 5 -

운영기관과 상시적으로 협의하고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 해당 지방고용노동(지)청은 지침 등 위반에 대해 경고, 시정조치, 위탁계약 해지 및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사업 평가**
  - **운영기관의 사업운영 성과**는 외부 전문기관(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해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공모에 반영**
  - \* 성과평가와 관련한 계획은 '25년 1분기 중 지방고용노동(지)청을 통해 통지 예정
- **사업 정산**
  - 사업종료 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수행에 대하여 정산
- **기타**
  - 과업의 주요내용 등(과업지시서)을 포함한 계약문서와 제안서, 관계 법령, 시행지침 등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며,
    - 과업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및 지방고용노동(지)청(고용센터)과 사전협의** 하에 수행하여야 함
  -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IV 입찰 개요

##### <1> 입찰 참가 자격

- **신청 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신청 제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기관(사업자)
    - ① 「직업안정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용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서, 고교·대학,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 대하여 직업선택, 경력개발, 전직지원, 구직기술 향상 등을 위한 **집단상담**이나 **취업특강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 4 -

##### <2> 입찰 제출서류 및 신청

- **신청 기간** : '25. 1. 3.(금) ~ '25. 1. 8.(수) 12:00
- **제출 서류**
  - 동 사업 위탁을 희망하는 기관(사업자)는 다음 서류를 모두 제출
    - ① 입찰참가 신청서(서식1)
    - ② 입찰서(서식2), 제안서(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4),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식5), 부정당업자 제제처분 관련 서약서(서식6)
    - ③ 공동수급협정서(서식7, 해당자에 한함)
    - ④ 사업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인설립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직업소개사업 신고·등록증 등)
    - ⑤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등
  - ☞ 신청서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하고, 제출서류 ①~④을 담은 USB 1개(담당자 메일로도 송부 가능)를 함께 제출
  - ☞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외한 서류(②~④)는 제본 또는 편철하여 2부 제출
- **신청 방법**
  - **사업수행 희망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 대표 고용센터(거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 \* 우편 접수는 마감일 현재 도착분에 한하며, 신청 기간을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함
    - \* 재공고('25.1.3.~'25.1.8.12:00)를 실시할 경우, 1차 공고 신청기관은 재공고로 인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다만 1차 공고시 제출한 관할 센터에 참여의사를 통보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신청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

- 6 -

## V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붙임 서식을 토대로 하여 자유롭게 작성
  - 제안서 용지크기는 A4로 하고, 기본적으로 단색(필요 시 칼라)으로 작성하되, 항목별로 인덱스를 부착하여 제본 또는 편철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는 A4용지 10페이지 내외로 작성하고 면수(page)를 기재하되, '제안서 평가기준(기술능력평가 항목)'에 따라 순차적으로 작성
- 사실에 입각한 실적자료를 제출하고, 인용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되, 증빙자료(100페이지 분량 이내)는 사업계획서와 분리하여 제출
- 비율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둘째자리에서 반올림), 금액은 원단위로 작성하고, 작성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기재

## VI 심사 및 결과 발표

- 심사·선정 절차
  - 서면심사 → PT심사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 낙찰자 결정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대표 지방고용노동(지)청 단위로 운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관에 대해 서면심사와 PT심사 실시
  - 심사 공정성 강화를 위해 특정지역 출신(소속기관 소재지 기준)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위원을 구성하면서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되도록 구성
    - \* 선정심사 위원이 응모한 신청기관과 친족관계 또는 당해 사업체의 임직원(과거 근무자 포함) 등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에서 배제
    - \*\* 그밖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취약계층 취업촉진사업 시행지침"을 따름
  -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적정한 운영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 선정 가능**
    - \*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

- 7 -

## VII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위탁계약 체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는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른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붙임4 참조]
    - 종합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득점 순, 배점항목이 큰 기술능력평가 기준의 득점 순으로 결정
    -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할 만한 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 선정 가능
  - 발표방법: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방법에 따름
- 협상 및 계약
  - 협상이 성사되면 상대방에 최종 사업자 선정결과를 통보하고 계약 체결(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 협상은 생략
      -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이행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사업 **실시지역 관할 "지방관서 분임계약관"**과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사업자) 간에 체결**(25.1.10.(금)까지)
    - \* 46개 지방고용노동(지)청 (대표)고용센터 소장을 분임계약관으로 임명
  - 계약체결 시 임금체불 금지, 4대 보험 가입, 근로기준법 준수 등 '업무담당자 근로조건 보호 협약서(서식 8)' 필수 제출

- 9 -

## □ 심사 기준

- 심사위원회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2024.9.13.)과 **제안서 선정심사 세부기준**(붙임4)을 따라 신청기관의 **기술능력**(80점 배점)과 **입찰가격**(20점 배점)을 평가
  - **입찰가격평가**는 입찰 공고문에서 제시된 **사업비보다 큰 금액**에 대해서만 **감점 부여**
    - \* (예시) 예상 사업비 대비 초과금액 5%당 5점을 감점, 최대 15점 감점
  - **기술능력평가**는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PT심사**를 진행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도, 사업수행계획 적절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
    - \* 점수가 배점 한도(80점)의 85% 미만인 경우에는 협상적격자로 선정할 수 없음

## □ 가·감점 사항

-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성과 우수기관**은 신청 자격을 갖춘 경우 선정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5점 범위에서 가점 부여**
  - ㉠ '24년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위탁사업 성과평가 결과 A등급을 받은 기관
    - \* '24년 성과평가를 받은 지역과 '25년 신청지역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 '24년부터 위탁계약 체결 방식 등이 변경됨에 따라(고용센터 단위 → 지방고용노동(지)청 단위) '25년 선정심사 시에는 '24년 평가결과만 반영하여 심사
  - ㉡ 「직업안정법」에 따라 최근 3년('22~'24년) 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프로그램 기획·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등을 위해 **서울고용센터에 소속직원을 상주**시킬 수 있는 신청기관에 대하여 선정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5점 범위에서 가점 부여**
  - \* 상주기간 및 방법 등은 협의결정
- '24년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위탁사업 성과평가 결과 **C등급**을 받은 경우 선정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5점 범위에서 감점 부여**
  - \* '24년 성과평가를 받은 지역과 '25년 신청지역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 '26년부터는 성과평가 결과 C등급을 2년 연속 2회 이상 부여받은 경우 심사 제외

- 8 -

## VIII 기타 유의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입찰은 무효임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비용은 제안업체가 모두 부담함
- 제출된 제안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모든 기재 내용은 해당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 허위서류 등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가능
- 제안서의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모든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 본 제안서에 따른 계약에 의한 산출물은 계약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그 소유권은 고용노동부에 귀속함
-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정보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에 있음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과 「용역입찰요시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6호, 2019.12.18.)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2021.12.1.)이 적용됨

## IX 문의처

-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담당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 대표 센터**(거점센터)에 문의 [붙임2 참조]

- 10 -

**붙임1** 2025년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재공고 현황

연번	지방고용노동(지)청명	운영고용센터	사업비 (천원)
전체			106,000
1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	안산, 시흥	106,000

**붙임2** 2025년 재공고 지방고용노동(지)청 문의처

연번	지방고용노동(지)청명	대표고용센터(거점센터)	문의처
1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	안산고용센터	031-412-6930

**붙임3** 제안서 선정심사 세부기준

**제안서 선정심사 세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I. 기술능력 평가	-	80
1. 과업의 이해도	과업의 목적, 과업내용에 이해도 등	15
	- 제안요청서의 방향에 대한 부합성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이해도	
2. 과업수행 계획의 적정성	사업 수행계획 전반, 일정 및 내용 등	20
	- 사업계획(일정)의 체계성 및 적합성 - 사업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3. 수행체계의 적절성	인력투입·업무분담의 적정성, 전문성 등	20
	- 인력투입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 진행자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계획의 적절성	
4. 기관의 수행 능력	관련 분야 수행실적, 인력 보유수, 기관의 신뢰도 등	25
	- 신청기관에서의 동일·사업 분야 수행실적 - 직업상담사 등 관련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 관련 전문가 동원 및 조직능력 - 신청기관의 경영상태, 대외 이미지, 발주처와의 지속적인 업무협조 가능 정도 등에 대한 총괄평가	
II. 입찰가격 평가	제시된 예산액보다 큰 금액에 대해서만 초과금액 5%당 5점을 감점(최대 15점 감점)	20
총점	-	100

※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의 배점은 80점과 20점으로 유지하되, 제안서 평가기준은 조정 불가함. 다만, 서울고용센터는 신청기관에서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센터 내 배치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5점 범위에서 추가 가점 부여 가능

**서식 1**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처리기간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시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고용노동부 제2024- 호	입찰일 자 2024년 12월 일
	입찰건명	2025년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위탁사업	
입찰보증금	납부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지)청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지)청의 일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와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불입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불입 1. 신청기관(사업자) 현황 및 사업추진실적 2. 사업신청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등) 3. 인감증명서 1부 4. 그 밖에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5년 1월 일			
			신청인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서식 2** 입찰서

입찰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내용	공고번호	경기고용노동지청 제2025- 호	입찰일 자 2025년 1월 일
	건명	2025년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위탁사업	
	금액	금 원정(₩ )	
	준공(납품)연월일		
입찰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과업내용서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1월 일			
			입찰자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4. 기타

㉑ 4대 사회보험 가입 현황

\*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O" 표시하고,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유 기재

구분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여부				

㉒ 2025년도 국가·자치단체 위탁사업 수행(예정) 현황

\*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취업지원사업(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위탁사업 제외)을 위탁받았거나 위탁예정(공모 준비 중인 경우도 포함)인 사업 기재

연번	발주기관	사업명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황) 4가지 유형 중 택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모 준비, 신청 접수, 심사 중, 선정</li> </ul> </li> <li>▪ (사업비) 00백만원</li> <li>▪ (사업내용) 간단하게 요약하여 기재</li> </ul>

1. 사업 목표

㉑ 운영방향

○  
-  
\*

㉒ 사업 목표

\* 정량적인 사업목표를 반드시 기재하고, 기타 사업계획서 상 중요 목표를 기재

프로그램 실시횟수		프로그램 만족도	기 타
집단상담	취업특강		

2. 사업 추진계획

㉑ 총괄

\* 사업개요 등을 간략히 기술

○  
-  
\*

㉒ 세부 사업계획

\* 사업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

- ① 전반적인 운영계획(직업상담사 배치 및 운영계획,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
- 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계획(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센터 타 사업과의 연계 방안, 효과적인 홍보방안 등)
- ③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계획(직업상담사 교육계획, 프로그램 내실화 방안, 취업지원서비스와의 연계 방안)
- ④ 고용센터와의 연계·협업에 관한 사항(관할 고용센터와 협력사업 및 그 내용, 고용센터와의 효과적인 협력방안 등)
- ⑤ 그밖에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신청기관의 계획 및 노력 등

# 제안서

사업명     **2025년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위탁사업**

. . .

## 제안기관명

○  
-  
\*

3. 프로그램 진행자 배치 및 인적자원 투자계획

㉑ 인력 현황 : 총 00명

\* 운영기관 선정 시 해당 지방고용노동(지)청의 프로그램 진행자로 배치할 예정인 인력 전체에 대하여 현황을 작성하고, 해당인력에 대한 이력사항(붙임4)과 직업상담사별 관련 자격증 사본은 1인당 3페이지 이내로 첨부(그림파일 용량 축소)

분야	소속기관	성명	생년월일	직위	전공 및 경력				4대보험 가입여부
					학위	전공	학교	경력	
책임자	교육원	홍길동	1970-05-10		박사	경제학	a 대학교	년 월	
강사	교육원	나강사	1975-05-05		석사	법학	b 대학교	년 월	

㉒ 진행자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

\* 민간위탁사업 수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협약서 첨부

\*\* 악성민원 발생 시 상담사 보호방안, 안전한 상담환경 조성계획, 안정적인 전문인력 확보 및 장기근속 유도 방안, 상담사 사기진작을 위한 동기부여 방안 등 작성

○  
-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에서 발주하는 '2025년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그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1.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또는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불이행시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지, 입찰(계약)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 (사)○○○ 대표이사 ○○○ (인)

○○지방고용노동(지)청 귀하

확인자 (인)
※ 소속기관장 날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서약자 : (사)○○○ 대표이사 ○○○ (인)

○○지방고용노동(지)청 귀하

공동수급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써 계약 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 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